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부조항 해설

법률 제4560호 '93. 6. 11, 시행일: '93. 7. 1

협회지 6월호에 게재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조항에 대하여 회원들의 많은 문의가 있어 이에 간략하게 해설을 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2조 (정의)**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규정(상사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300인 이하인자)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1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고용의무 완화)** 중소기업자등은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전기용량에 미달하는 전기설비를 보유한자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의무를 면제한다.

**해설** 이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45조에 관계없이 이법 시행규칙에서 어느 범위의 전기용량을 정하여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되어지고 있는 것은 ① 전기안전관리원 의무선임범위가 1000kW 이상에서 2000kW 이상으로 결정중에 있고 얼마후 시행될 것이며 용량 2000kW미만의 전기설비를 보유한자는 전기안전관리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규칙 제58조 제3항). ② 전기설비용량 1kW라도 자가용전기설비로 되어 있던 전기설비인 폭발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가 20kW이상이어야 자가용으로 될 것으로 본다(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즉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등은 앞

으로 20kW이상이어야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제2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채용한 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자격을 하나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6.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8.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이 조항은 중소기업자등이 자기회사에 채용

선임된 자중에서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격에 해당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겸임을 동일 회사사업장에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산업안전기사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때 기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상기 관련된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으면 상기 관련된 법에 의거 겸임을 다 할수 있는 것이다.

**제29조 (에너지관리자등의 고용의무 완화) ①** 생략

②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 에너지관리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각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은 그 자의 해당 업무를 규정하는 당해 법령에 따라 선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전기안전관리사 및 전기안전관리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에너지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겸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92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으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교육을 면제받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한 것이다.

**제33조 (검사의 완화) ①**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 및 제48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
- 4~6. 생략.

③~④ 생략.

**해설** 이 조항은 같은 기계·기구나 설비를 검사함에 있어 각각의 법에 의하여 검사하던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 검사(수전설비), 용접검사, 정기검사(고압이상의 수전설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확정안 (6월회지 관련)**

법안	확정안
제28조(환경관리인의 고용의무 완화) 3. 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협동화 단지	제28조(환경관리인의 고용의무 완화) 3. .... 및 이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②(공업단지 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부칙(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② ..... .....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